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35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구자근
강명구 · 조지연 · 김성원
서천호 · 이현승 · 김승수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 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학생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특례) ①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
2.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여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2.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3.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4. 안전관리 책임자
5.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송계약의 절차 및 방법, 운행계획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학생 통학을 위한 전</u> <u>세버스운송사업의 특례) ① 제</u> <u>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u> <u>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u> <u>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u> <u>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u> <u>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u> <u>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u> <u>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u> <u>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u> <u>“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u> <u>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u> <u>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u> <u>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u> <u>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계약</u> <u>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u> <u>있다.</u> <u>1.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u> <u>선정한 대표자</u> <u>2.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된 단</u> <u>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
표하여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2.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3.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4. 안전관리 책임자

5.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
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
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송계약의 절
차 및 방법, 운행계획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